

■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 추계신고

기준 경비율	사업소득금액 • 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(주요경비 + 기준경비) ▶ 주요경비(입증) = 매입비용, 임차료, 인건비 ▶ 기준경비 = 수입금액 × 기준경비율(복식부기의무자 '기준경비율×50%' 적용)
--------	---

■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

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의 순서로 공제한다.
- 근로소득금액 → 연금소득금액 → 기타소득금액 → 이자소득금액 → 배당소득금액
-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킨다.

■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

특별소득공제	근로소득이 있는 자
주택마련저축공제	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	

■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

구 분	영세율제도	면세제도
특정	소비지국 과세원칙, 수출장려	저소득층의 역진성 원화
납세의무자	부기기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	부기기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
매입세액	공제가능	공제불가
면세정도	완전면세	불완전면세

■ 과정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

- 법인(유기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)의 국세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
- 납세의무자 :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정주주
-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: 징수부족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

■ 자금출처조사 소명금액

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증여세가 과세된다.
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된다.

미입증금액 ≤ Min[취득 재산가액×20%, 2억 원]

■ 양도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

양도로 보는 경우	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
①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	① 환자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
②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	② 보류지로의 충당
③ 공동사업에 현물출자	③ 자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
④ 협의매수, 수용, 공매, 경매 등	④ 양도담보 제공
	⑤ 매매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환원
	⑥ 연접한 토지의 공유율 분할
	⑦ 신탁해지
	⑧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

■ 연금계좌세액공제

종합소득금액(총급여액)	연금저축 한도(퇴직연금포함 통합 한도)	공제율
4,500만 원 이하(5,500만 원)	600만 원(900만 원)	15%
4,500만 원 초과(5,500만 원)		12%
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만기로 계좌 전부 또는 일부가 연금계좌로 이체된 경우 전환금액의 10%(300만 원 한도)의 금액 : 연금계좌세액공제 추가 적용

■ 연금수령 시 과세 : 연금소득세

소득원천	세금의 종류	세율	종합소득 합산 여부
이연퇴직소득	연금 소득세	퇴직소득세율 × 70%(60%) (연금실수령연차 11부터는 60%)	합산하지 않음 (무조건 분리과세)
그 외 소득(운용 수익 및 공제받은 자기부담금)		원천징수세율 3 ~ 5%	연간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1,200만 원 초과 시 합산 또는 분리과세(15%)

이패스코리아 회원님께 드리는 선물

▶ 신규가입 선물

이패스코리아 신규 가입시 수강료 5% 할인쿠폰 지급

금융 & 은행자격증 환승 이벤트

- ▶ 금융, 은행자격증 타사 수강내역 또는 시험 응시내역(독학) 첨부 시 판매가의 20% 할인 혜택!
(단, FPSB와 FP협회의 수료과정은 10%만 할인 제공)

New 2023년 연금상담전문가 과정

- ▶ 국내 최초 연금상담 전문자격증!
- ▶ 연금 준비단계부터 은퇴 후 전반적인 연금생활까지, 공적·사적 연금 등 연금에 관한 종합적·전문적 상담을 수행합니다.
- ▶ 구성 : 정규이론 (한국FP협회 기본서+이패스 요약&문제풀이집 제공)
- ▶ 교육비 : 135,000원 (5명 이상 동시신청 시 10% 추가할인)
- ▶ 계속교육학점 40학점 인정

2024년 시험안내

▶ [400%환급반] 2024년 3월 16일 대비 AFPK패키지

- 구성 : 이론 + 문제풀이 + 핵심요약 + 최종모의고사
- 교재 : 기본서(8권), 모듈별 핵심요약집/문제집, 최종실전모의고사
- 혜택 : 상위(10위) 합격 시 400% 환급, 일반 합격 시 200% 환급
※ 이패스코리아 AFPK 수강(수료) 후 합격 시 CFP 정규이론 + 문풀강의 무료 제공! (이패스 제작교재 포함)

▶ 2024년 5월 18일 대비 CFP 프리미엄 패키지

- 구성 : TVM + 이론 + 문제풀이 + 최종모의고사
- 교재 : 기본서(9권), 재무계산기, 문제집, 요약집, 모의고사
- 교육비 : 450,000원(대학생 할인 400,000원)

계속교육학점 과정

▶ 윤리1학점 포함 일반 과정 최소 2학점부터 최대 101학점까지 다양한 분야의 단과, 종합, 패키지 구성 & 수료보고 대행서비스!

*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

과정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은 홈페이지 <http://www.epasskorea.com>

상담전화 1600 - 0522

꼭 시험에 나오는 핵/심/체/크

2023년 11월 18일(토) 시험대비

AFPK

이패스코리아가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!



❖ AFPK 시험정보 ❖

▶ 시험 시간 : 11월 18일(토) 14:00 ~ 18:00

▶ 합격자발표 : 12월 8일(금)

1과목 재무설계개론 및 직업윤리

- 2000년 4월 한국FP협회 창립, 13번째 회원국(6월 업무 제휴)
- 2004년 한국FPSB와 한국FP협회 분리, AFPK 자격인증요건 (교육, 시험, 윤리)
- AFP자격국가 (호주, 일본,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)
- 자격갱신 : 유효기간 2년, 20학점 (윤리학점 2학점)
- 재무설계사 : 재무전문가, 교육전문가, 상담전문가
- 부채관리 : ① 담보인정비율(LTV) ② 총부채상환비율(DTI) ③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
- 신용회복위원회 : [연체 전 채무조정(신속채무조정 30일 이하), 이자를 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 80일 이하), 개인워크아웃 90일(3개월) 이상] 총채무액 15억, 보증인 동일 효력
- 법원 : 개인회생제도(총채무액 25억), 개인파산제도(당부 면책 허용 안 됨),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유사, 보증인 동일한 효력 없음
- 전문금융소비자 적용
6대 판매규제 중 (불공정영업행위금지, 부당권유, 광고규제), 위법계약해지권
- 일반금융소비자 적용
6대 판매규제(적합성, 적정성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금지, 부당권유, 광고금지), 청약철회권, 위법계약해지권
- 재무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
 - 충실히의무, 고지의무, 진단의무(투자자 적합성), 자문의무, 간접유지의무 윤리원칙
 - * 고객우선의 원칙, * 성실성의 원칙, * 객관성의 원칙, * 공정성의 원칙
 - * 전문가 정신의 원칙, * 능력개발의 원칙, * 비밀유지의 원칙, * 근면성의 원칙
 - 한국FPSB에 대한 통지의무 : 이메일 주소, 전화번호 등 변경 1개월 또는 30일 이내 한국FPSB 통보
 - 결격사유(13가지로 제시, 파산 5년, 금고 3년, 신념 1년, 음주·약물 1년, 등)
- AFPK® 자격상표
 - 항상 대문자로 사용해야 한다. ★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™ (큰 대문자와 작은 대문자 혼용 가능)
 - 글자 사이에 생략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항상 '®' 심볼을 위첨자로 사용하여야 한다.
 - 다만 인쇄물이나 문장 내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또는 위첨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'®' 심볼의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.

2과목 은퇴설계

■ 국민연금*

-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1년 이내, 50세 이상 5년 이내 / 추후납부 10년 미만(119개월)의 범위 내(최대 60회 분납가능)
- 실업크레딧(구직급여 수급자 대상, 본인부담 25%) 12개월 한도
- 출산크레딧 : 2자녀(12개월), 3자녀(30개월), 4자녀(48개월), 5자녀 이상(50개월) / 군복무크레딧 6개월

■ 노령연금*

- (10년 이상), 조기노령연금(최대 5년 일찍, 1년 당 6%감액), 소득이 있는 업무(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,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), 노령연금연기제도(노령연금수급연령[지급 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]부터 5년의 기간 이내, 신청횟수 제한 없음, 매1년당 7.2%)

■ 분할연금

- 이혼, 수급개시연령 도달,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, 해당 연금액의 1/2
- 반환일시금 * 반납은 최대 24개월까지 허용
- 중복급여의 조정 * : 노령연금 선택(노령연금 + 유족연금의 30%), 유족연금 선택(유족연금 지급)
- 공적연금 연계 * : 10년(군인연금과 연계 20년), 임의계속가입기간(연계대상기간 미 포함), 연계급여 연금액 산정 시는 포함)

■ 퇴직 급여 직접 지급 가능

- 55세 이상,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, 퇴직위로금 또는 명예퇴직금

■ 담보제공 및 인출 : DB형은 중도인출 금지

-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,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, 6개월 이상 요양, 역산 5년 이내 파산선고·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,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, [대학등록금, 결혼비용, 장례비 부담]은 담보제공에 한함

■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: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 이하

- 균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 원 이하 : 16.5%, 해당 금액 초과는 13.2%,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
-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(단,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)이고 ISA만기 이체 관련 한도 300만 원 포함하는 경우 1,200만 원임
- 중도인출 :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, 그 밖의 경우 기타소득세 16.5%

3과목 부동산 설계

■ 토지의 자연적 특성

부동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동산 활동 및 시장의 국지화 •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에서 현장답사활동이 필요 • 부동산중개업이 제도화되는 근거가 됨
부증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가상각 적용이 배제 •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를 관리해야 함
영속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가상각 적용이 배제 •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를 관리해야 함
개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별성으로 인해 비대체성이 특성을 갖고 있음 • 토지의 개별성으로 인해 '일몰일기의 법칙' 적용을 배제

■ 부동산 수요의 증가요인과 공급의 증가요인

수요의 변화(증가요인)	공급의 변화(증가요인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구 및 가구 수의 증가 • 소득수준 증가(정상재의 경우) • 금리의 인하 • 대체재의 가격 상승 및 수익률의 악화 • 부동산 조세의 세율 원화 • 공·사법상 규제 완화 •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급자의 수 증가 • 건축기술의 발달 • 원가절감과 공사기간의 축소 등
법적 성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체로 임의규정임 • 물건에 대한 지배권
객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존·특정·독립의 물건
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절대권(모든 사람에게 주장) • 배타성·존재(독점성)
효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차권에 대한 우선성 • 물권 간 시간적으로 우선권

■ 지목

- 1필 1목의 원칙 단, 과수원, 목장용지, 묘지의 일부가 주택 또는 시설관리사무소 등으로 쓰이는 면적은 대로 한다.
- 하천과 구거 : 하천(자연적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), 구거(인공적인 수로부지 또는 자연적 유수의 부지로 소규모 수로부지)
- 도로 : 휴게소부지도 도로에 해당함
- 부호의 사용 : 초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장/차/천/원 은 제외
☞ 공장용지, 주차장, 하천, 유원지

■ 경매와 공매

구분	경매	공매
명도책임	매수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입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• 수탁자산은 매도인 • 압류자산과 국유재산은 매수인
인도명령과 명도소송	인도명령 후 명도소송 진행	인도명령제도 없으며 명도소송만 가능
보증금액	최저매각가격의 10%	입찰가격의 10% (1천만 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)
매각방법	기일입찰 방식	기간입찰 방식

■ 해제와 해지

구분	해제	해지
효력	소급효	장래효
의무	원상복구의무	청산의무
손해배상책임	인정	인정
적용	1회성 거래(매매계약 등)	계속적 거래(임대차 등)

■ 재개발과 재건축사업

구분	재개발	재건축
정비기반시설	열악	양호
건축물	노후·불량	노후·불량
안전진단	실시하지 않음	실시함
세입자 대책	있음	없음
개발부담금	없음	부과(초과이익환수법)

■ 리츠

-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(일반 REITs) : 실체형 회사
-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: 명목회사
-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(CR-REITs) : 명목회사

4과목 상속설계

- 상속결격(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음), 고의,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 조건은 상해로 인한 사망은 포함 안 됨. (낙태도 상속결격) (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됨) 사기, 또는 강박, 위조, 변조, 파기
- 대습상속의 인정요건 : 선사망, 상속결격, 동시사망의 추정 또한 상속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.
 - 상속포기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
- 상속의 승인과 포기(고려기간 :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, 특별한정승인 : 중대한 과실 없어야함, 3월내에 한정승인 가능,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,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)
 -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: 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확정일자인
-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: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
- 간주상속재산 : 생명보험금 및 손해보험금, 신탁재산, 퇴직금 등 단, 법령에 따른 유족연금 등은 제외
- 추정상속재산 : 1년 이내 2억, 2년 이내 5억
- 사전증여재산(상속인 10년 이내, 상속인 외의 자(5년 이내))
 -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만 적용·기초공제(2억 원) + 그 밖의 인적공제
- 배우자상속공제 :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
- 분납 : 1천만 원 초과, 연부연납 : 2천만 원 초과, 물납 : 2천만 원 초과, 증여는 물납 불가
- 비과세 증여재산 : 연간 4천만 원 이내의 보험금, 장애인 신탁재산(5억 원 한도)
- 증여재산기선액 : 금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(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봄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금번 증여와 합산 과세
- 상속·증여재산의 평가(원칙 : 시가평가)
 - 평가기간 : 상속(평가기준일 전·후 6개월), 증여(평가기준일 전6개월, 후3개월)

■ 계약 관계별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 과세 여부

납입한 계약자 등이 생존한 경우 증여세 과세,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, 본인이 납입한 경우 세금 없음

5과목 위험관리와 보험설계

- 물리적 위태(빙판길 운전, 주유소에서 담배 등)
- 도덕적 위태(부정직, 무책임, 수리비 과잉 청구, 보험사기, 자동차 사고 조작, 공장에 방화 등)
- 정신적 위태(부주의, 무관심, 고의성은 없으나 손실 발생을 방관, 태도 위태, 주의력 감소로 문 열어둔 채 외출, 정신적 위태는 넓은 의미에서 도덕적 위태에 포함)

■ 보험제도의 기본원리

대수의 법칙, 수지상등의 원칙, 급부·반대급부의 원칙(개별 수지 균등의 원칙)
※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(이득금지원칙)

■ 보험계약의 특성

불요식·낙성계약, 유상·상무계약, 조건부계약, 사행(요행)계약, 부합계약
※ 사망보험은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15세 미만, 심신상실, 심신박약(예외 있음)일 경우 무효 처리된다.

■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(3가지)

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주지 않은 때, 약관의 중요한 내용 미 설명, 청약서에 자필·서명하지 않은 때

■ 보험설계사

제1회 보험료 수령권 / 보험대리점(계약체결 대리권, 고지의무수령권, 보험료 수령권)

■ 장애인전용보험

세액공제 연간 100만 원(지방소득세 포함 16.5%), 연간 보험금 4,000만 원 한도 내 증여세 비과세

■ 감액완납 : 보험료 미납, 보험금 감액, 보장기간 동일, 해지환급금 미지급

■ 연장정기 : 보험료 미납, 보험금 동일(특약은 해지), 보장기간 단축, 해지환급금 미지급

■ 위법계약해지 :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,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 위법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 책임준비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.

■ 상해보험 : 급격(예측불가능이나 불가피성)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세 가지 조건 충족 및 인과관계 존재해야 한다.

■ 손해보험 :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적이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어 사고 발생의 여부와 사고 발생 시간 및 규모가 모두 불확정적인 특징이 있다.

■ 주택화재보험(화재, 범락, 폭발, 파열 등 보상) 80% Co-Insurance를 적용하여 계산한다. 일반화재보험에서 일반물건(재고자산 제외)은 주택화재보험 동일하게 계산

■ 배상책임보험 : 보험기액, 중복보험, 초과보험의 개념이 없다. 피보험자의 과실, 즉 부주의를 담보한다.

■ 자동복원제도(장기화재보험) :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% 미만(또는 이하)일 경우 잔여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음

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: 배상책임의 주체(운행자), 책임형태(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), 입증책임(가해자, 운행자), 손해배상 보장제도(의무보험, 직접청구권,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등)

■ 반의사불벌 또는 보험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

사망사고, 사고 후 도주(뺑소니),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.

■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: (대인배상)은 1인당 보상한도 유한, 1사고당 보상한도는 없음, 대물 보상은 1사고당 2천만 원 한도로 보상),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

■ 종합보험(임의보험)

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상 책임의 부담을 덜 수 있다.

■ 운전자보험 :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하는 비용(의료비, 별금, 방어비용, 형사합의지원금, 면허취소위로금 등)을 보상하는 상품이다.

6과목 투자설계

■ 고용률과 실업률

- 실업률 = 실업자 ÷ 경제활동인구 × 100
- 취업률 = 취업자 ÷ 경제활동인구 × 100 = 100 - 실업률
- 고용률 = 취업자 ÷ 만 15세 이상 인구 × 100

■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의 관계

상황	평가	비고
기대수익률 > 요구수익률	저평가상태	내재가치 > 시장가격
기대수익률 = 요구수익률	적정상태	내재가치 = 시장가격
기대수익률 < 요구수익률	고평가상태	내재가치 < 시장가격

■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의 관계

자본시장선 (CML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위험(σ)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• 효율적 포트폴리오로만 구성
증권시장선 (SML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체계적 위험(β)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• 개별 자산, 비효율적 포트